

●국토교통부공고 제2022-1408호

「주택법」 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14일

국토교통부장관

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

- 1. 지정해제 지역 : 경기도 성남시 일부(중원구), 동탄2택지개발지구, 구리시, 안양시 동안구·만안구, 광교택지개발지구, 수원시 팔달구·영통구·권선구·장안구, 용인시 수지구·기흥구·처인구, 의왕시, 고양시, 남양주시, 화성시, 군포시, 부천시, 안산시, 시흥시, 오산시, 광주시, 의정부시, 김포시, 인천광역시 중구·동구·미추홀구·연수구·남동구·부평구·계양구·서구, 세종특별자치시
- 2. 해제일 : 2022년 11월 14일
- 3. 효력발생시기 :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※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

시·도	현 행	조 정 (2022.11.14)
서울	서울특별시 전역 (25개區)	좌동
경기	과천시, 성남시, 하남시, 동탄2택지개발지구 ^{주1)} , 광명시, 구리시, 안양시(동안구, 만안구), 광교택지개발지구 ^{주2)} , 수원시(팔달구, 영통구, 권선구, 장안구), 의왕시, 고양시, 남양주시 ^{주3)} , 화성시 ^{주4)} , 군포시, 부천시, 안산시 ^{주5)} , 시흥시, 용인시(수지구, 기흥구, 처인구) ^{주6)} , 오산시, 광주시 ^{주7)} , 의정부시, 김포시 ^{주8)}	과천시, 성남시 ^{주11)} , 하남시, 광명시
인천	중구 ^{주9)} , 동구, 미추홀구, 연수구, 남동구, 부평구, 계양구, 서구	전역 해제
세종	세종특별자치시 ^{주10)}	해제

- 주1) 화성시 반송동·석우동, 동탄면 금곡리·목리·방교리·산척리·송리·신리·영천리·오산리·장지리·중리·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
- 주2)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·원천동·하동·매탄동, 팔달구 우만동, 장안구 연무동,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,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
- 주3) 화도읍, 수동면, 조안면 제외
- 주4) 서신면 제외
- 주5) 단원구 대부동동·대부남동·대부북동·신감동·풍도동 제외
- 주6) 처인구 포곡읍, 모현읍, 백암면,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·사암리·미평리·좌항리·맹리·두창리 제외
- 주7) 초월읍, 곤지암읍, 도척면, 퇴촌면, 남종면, 남한산성면 제외
- 주8) 통진읍, 대곶면, 월곶면, 하성면 제외
- 주9) 을왕동, 남북동, 덕교동, 무의동 제외
- 주10)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-418호(2006.10.13.)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, 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
- 주11) 중원구 제외